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9

발의연월일: 2020. 7. 29.

발 의 자:윤한홍·한무경·권성동

배현진 • 이철규 • 태영호

서일준 · 조경태 · 장제원

홍준표 • 조수진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형사 관련 절차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에 사용되는 용 어나 문장은 다른 법령 문장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 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 조, 제13조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관할의 병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 제1심법 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아자"를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빈 곤"을 "빈곤이나"로,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를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령"을 "나이"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를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로 하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교통·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해야 한다.

-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사유
 -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 지를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

야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6조 · 제89조 및 제9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제9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

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제9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여야"를 "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하겠다는"을 "않겠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보증금 상당의"를 "보증금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를"을 "주거를"로, "수인할"을 "받아들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의"를 "아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권리회복"을 "권리 회복"으로, "금원"을 "금전"으로, "상당한"을 "상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피고인 또는"을 "피고인이나"로 한다.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함에 있어서"를 "정할 때"로, "고려하여야"를 "고려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과"를 "전과(前科)"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력"을 "자금능력"으로 한다.

제114조의 제목 "(令狀의 方式)"을 "(영장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 1. 피고인의 성명
- 2. 죄명

- 3. 압수할 물건
-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5. 영장 발부 연월일
-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16조 및 제1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또는 선차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는 선차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한다.
 -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제1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받

- 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8조 및 제15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해야 한다.
 -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해야 한다.
 - ③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해야 한다.

제16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차폐(遮蔽)시설"을 "가림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령"을 "나이"로, "진술하는"을 "진술할"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는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할 수 있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 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제214조의2의 제목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查)"를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중 "피의자를 체포 또는"을 "피의자를 체포하거나"로,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을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로, "자"를 "사람"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 제1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아니하고"를 "않고"로,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을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 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

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 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 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 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②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제214조의3의 제목 "(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을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제2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248조의 제목 중 "공소효력의"를 "공소의 효력"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공소는"을 "공소의 효력은"으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를 "자에게만 미친다"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공소는 그 효력이"를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로 한다. 제2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 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 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3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 의 선고를 해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 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45조 및 제34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 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해야 한다.
 -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제36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420조 및 제4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 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

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제462조 및 제46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第6條(土地管轄의 併合審理) 土地 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關聯 事件이 各各 다른 法院에 係屬 된 때에는 共通되는 直近 上級 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의 申 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1個 法 院으로하여금 併合審理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管轄의 競合) 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같이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먼저 公 訴를 받은 法院이 審判한다. 但,各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은 檢事 또는 被告人 의 申請에 依하여 決定으로 뒤 에 公訴를 받은 法院으로 하여 금 審判하게 할 수 있다.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 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 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 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 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 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 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할의 병합)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다음 각 호의 경우 관계있는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

니한 때

-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 管轄法院이 없는 때
- 第16條(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申 제16조(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 請의 方式) ① 管轄의 指定 또 는 移轉을 申請함에는 그 事由 를 記載한 申請書를 直近 上級 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 ② 公訴를 提起한 後 管轄의 指定 또는 移轉을 申請하는 때 에 通知하여야 한다.
-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 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 6. (생략)
 -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은	때
---	---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신청의 방식) ①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려면 그 사 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바로 위 의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할 때에 에는 卽時 公訴를 接受한 法院 | 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세33조(국선변호인)	①

- 1. ~ 3. (현행과 같음)
- 4.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 5.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 6. (현행과 같음)
- ② ------빈곤이나-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 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 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 여야 한다.

第34條(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제34조(피고인·피의자와의 접견·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 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 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第37條(判決, 決定, 命令) ① 判決 | 제37조(판결, 결정, 명령) ① 판결 은 法律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口頭辯論에 依據하여야 한다.

- ② 決定 또는 命令은 口頭辯論 | 에 依據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③ 決定 또는 命令을 함에 必 要한 境遇에는 事實을 調査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해야
③
- <u>인정하면</u>
<u>않는 범위에서 변</u>
호인을 선정해야

교통·진료) 변호인이나 변호인 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이 되려는 사람은 신체가 구속 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 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 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 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口頭辯論)을 거쳐서 해야 한다.

- ② 결정이나 명령은 구두변론 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 ③ 결정이나 명령을 할 때 필 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前項의 調査는 部員에게 命 할 수 있고 다른 地方法院의 判事에게 屬託할 수 있다.
- 第48條(調書의 作成方法) ① 被告 | 제48조(조서의 작성 방법) ① 피 人,被疑者,證人,鑑定人,通譯 人 또는 飜譯人을 訊問하는 때 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이 調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 ② 調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 하여야 한다.
 - 1. 被告人,被疑者, 證人, 鑑定 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의 陳 述
 - 2. 證人, 鑑定人, 通譯人 또는 飜譯人이 宣誓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事由
 - ③ 調書는 陳述者에게 읽어주 거나 閱覽하게 하여 記載內容 의 正確與否를 물어야 한다.
 - ④ 陳述者가 增減變更의 請求 를 한 때에는 그 陳述을 調書 에 記載하여야 한다.
 - ⑤ 訊問에 參與한 檢事,被告 人, 被疑者 또는 辯護人이 調書 의 記載의 正確性에 對하여 異

- ④ 제3항의 조사는 부원(部員) 에게 명할 수 있고 다른 지방 법원의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 다.
- 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 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 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기재해야 한다.
 -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 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 술
 -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
-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 주 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내용 이 정확한지를 물어야 한다.
 - ④ 진술자가 조서에 대하여 추 가, 삭제 또는 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내용을 조서 에 기재해야 한다.
 - ⑤ 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

要旨를 調書에 記載하여야 한 다.

- ⑥ 前項의 境遇에는 裁判長 또 는 訊問한 法官은 그 陳述에 對한 意見을 記載하게 할 수 있다.
- (7) 調書에는 陳述者로 하여금 間印한 後 署名捺印하게 하여 야 한다. 但, 陳述者가 署名捺 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由를 記載하여야 한다.
- 第66條(期間의 計算) ① 期間의 計算에 關하여는 時로써 計算 하는 것은 卽時부터 起算하고 日, 月 또는 年으로써 計算하는 것은 初日을 算入하지 아니한 다. 但, 時效와 拘束期間의 初 日은 時間을 計算함이 없이 1 日로 算定한다.
 - ② 年 또는 月로써 定む 期間 은 曆書에 따라 計算한다.
 - ③ 期間의 末日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該當하는 날은 期間 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時

- 議를 陳述한 때에는 그 陳述의 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異議)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해 야 한다.
 -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 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

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

유를 기재해야 한다.

- 제66조(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 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 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 (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계산에 넣지 않는다. 다만, 시 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
 -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 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계산에

는 例外로 한다.

第86條(護送 中의 假留置) 拘束令 狀의 執行을 받은 被告人을 護 送할 境遇에 必要한 때에는 가 장 接近한 矯導所 또는 拘置所 에 臨時로 留置할 수 있다.

第89條(拘束된 被告人과의 接見, | 제89조(구속된 피고인의 접견·진 受診) 拘束된 被告人은 法律의 範圍 内에서 他人과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하며 醫 師의 診療를 받을 수 있다.

第91條(非辯護人과의 接見,交通 의 接見) 法院은 逃亡하거나 또는 罪證을 湮滅할 念慮가 있 다고 認定할 만한 相當한 理由 가 있는 때에는 職權 또는 檢 事의 請求에 依하여 決定으로 拘束된 被告人과 第34條에 規 定한 外의 他人과의 接見을 禁 하거나 授受할 書類 其他 物件 의 檢閱, 授受의 禁止 또는 押 收를 할 수 있다. 但, 衣類, 糧 食, 醫療品의 授受를 禁止 또는

效와 拘束의 期間에 關하여서 넣지 않는다. 다만, 시효와 구 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 다.

> |제86조(호송 중의 가유치) 구속영 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 송할 경우에 필요하면 가장 가 까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임 시로 유치할 수 있다.

료)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 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 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하 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 다.

제91조(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 견·교통)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 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 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 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 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 押收할 수 없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 조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 지 <u>아니하겠다는</u> 서약서를 제출할 것
- 2. 법원이 정하는 <u>보증금 상당</u>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 거를 제한하고 <u>이를</u>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 치를 <u>수인할</u> 것
-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u>자</u>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

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
다.
 제98조(보석의 조건)
건체하
<u>정해야</u>
1
- <u>않겠다는</u>
2 <u>보증금에 해</u>
<u>당하는</u>
_
3
<u>주거를</u>
받아들일
<u> </u>
4.
사람
앓고

거·직	장	등	ユ	주변에	접근
하지	아니	<u> 할</u>	것		

- 5. 피고인 <u>외의</u> 자가 작성한 출 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u>아니할</u> 것을 서약 할 것
-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u>권리회복</u>에 필요한 <u>금윈</u>을 공탁하거나 그에 <u>상</u> 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 8. <u>피고인 또는</u>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 9. (생략)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 건을 <u>정함에 있어서</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고려하여야</u> 한다.

- 1. 2. (생략)
- 3. 피고인의 <u>전과</u>·성격·환경 및 자산
- 4. (생략)
- ② 법원은 피고인의 <u>자력</u>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第114條(令狀의 方式) ① 押收・搜

<u>야 후</u>
5아닌
6
o.

7
<u>권리 회복</u>
- <u>금전상</u>
<u>당하는</u>
8. <u>피고인이나</u>
9. (현행과 같음)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
사항) ①
정할 때
고려해야
1.·2. (현행과 같음)
3전과(前科)
4. (현행과 같음)
②자금능력-
제114조 <u>(영장의 방식)</u> ① <u>압수·수</u>

間과 그 期間을 經過하면 執行 에 着手하지 못하며 令狀을 返 還하여야 한다는 趣旨 其他 大 法院規則으로 定한 事項을 記 載하고 裁判長 또는 受命法官 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 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기 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의 令狀에 準用한다.

索令狀에는 被告人의 姓名, 罪 색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名, 押收할 物件, 搜索할 場所, 을 기재하고 재판장이나 수명 身體, 物件, 發付年月日, 有效期 |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한다. -------기재해야----.

- 1. 피고인의 성명
- 2. 죄명
- 3. 압수할 물건
- 4.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5. 영장 발부 연월일
- 6. 영장의 유효기간과 그 기간 이 지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며 영장을 반환해야 한 다는 취지
-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 하는 사항
- ② 第75條第2項의 規定은 前項 | ② 제1항의 영장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을 준용한다.

第116條(注意事項) 押收・搜索令狀 | 제116조(주의사항) 압수・수색영장

密을 保持하여야 하며 處分받 은 者의 名譽를 害하지 아니하 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第123條(令狀의 執行과 責任者의 |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參與)① 公務所,軍事用의 航 空機 또는 船車內에서 押收・搜 索令狀을 執行함에는 그 責任 者에게 參與할 것을 通知하여 야 한다.

② 前項에 規定한 以外의 他人 의 住居, 看守者있는 家屋, 建 造物, 航空機 또는 船車内에서 押收・搜索令狀을 執行함에는 住居主, 看守者 또는 이에 準하 는 者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者를 參與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隣居人 또는 地方 公共團體의 職員을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① 身體의 檢査에 關하여는 檢 査를 當하는 者의 性別, 年齡, 健康狀態 其他 事情을 考慮하 여 그 사람의 健康과 名譽를

의 執行에 있어서는 他人의 秘 | 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 을 보호해야 하며 처분받은 자 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한다.

> 참여) ① 공무소, 군사용 항공 기 또는 선차 안에서 압수·수 색영장을 집행하려면 그 책임 자에게 참여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규정한 장소 외에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 옥, 건조물(建造物), 항공기 또 는 선차 안에서 압수·수색영장 을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住居 主),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사람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에는 이웃사람 또 는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 여하게 해야 한다.

第141條(身體檢査에 關한 注意) | 제141조(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 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 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 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害하지 아니하도록 注意하여야 한다.

- ② 被告人 아닌 者의 身體檢查 는 證跡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는 顯著한 事由가 있는 境遇 에 限하여 할 수 있다.
- ③ 女子의 身體를 檢査하는 境 遇에는 醫師나 成年의 女子를 參與하게 하여야 한다.
- ④ 死體의 解剖 또는 墳墓의 發掘을 하는 때에는 禮를 잊지 아니하도록 注意하고 미리 遺 族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第148條(近親者의 刑事責任과 證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 言拒否) 누구든지 自己나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한 關係있는 者가 刑事訴追 또는 公訴提起 를 當하거나 有罪判決을 받을 事實이 發露될 念慮있는 證言 을 拒否할 수 있다.
 -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 던 자
- 2. 法定代理人. 後見監督人 第157條(宣誓의 方式) ① 宣誓는 |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② 宣誓書에는 「양심에 따라」

②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검 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③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 우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참 여하게 해야 한다.
- ④ 시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 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 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宣誓書에 依하여야 한다.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해야 한 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 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 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 니다」라고 記載하여야 한다. ③ 裁判長은 證人으로 하여금 宣誓書를 朗讀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但, 證人이 宣誓書를 朗讀하지 못하거나 署名을 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參與한 법원사무관등 이 이를 代行한다.

④ 宣誓는 起立하여 嚴肅히 하 여야 한다.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저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 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 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蔽)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2	선계	러서	에는	"्रे	심어		따	라
全	김과	보	탬이	없이	사	실	ユ	대
<u>로</u>	말히	-고	만일	거짓	말이)	있	<u>٥</u>
<u>면</u>	위증	의	벌을	받기	로	맹	세	<u>합</u>
<u>니</u> [다."리	고	기재	해야	한디	<u> </u>		

3	재목	판정	는은	7	들인	에)	게	선	서	서
를	낭	·독	하고	<u>!</u>	기	명님	<u> </u>	하	거	나
<u>서명</u>	를 하	게	해 (o}:	한	다.	じ	·만		증
인ㅇ] /	선사	l 서·	를	낭	·독	하기		못	하
<u> 거니</u>	}	네명	을	하	기	못	하듺	=	경	우
에는	<u>-</u>	참여	겨 힌	<u>-</u>	법	원스	나무	-관	등	(ه
<u>대 형</u>	병한	<u>다.</u>								

<u>④</u>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해야 한다.		

웨165 <i>조</i>	의2(ㅂ	미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선]문)	
	<u>-사람</u>	<u> </u>		
			<u>0</u>	<u>]정할</u>
		· <u>-</u>	가림	시설

1. 「아동복지법」 <u>제71조제1항</u> 1. -----<u>제71조제1항</u>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죄의 피해자

- 2. (생략)
-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 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 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 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자
- 第177條(準用規定) 前章의 規定은 拘引에 關한 規定을 除한 外에 는 鑑定에 關하여 準用한다.
- 第181條(聾啞者의 通譯) 聾者 또 제181조(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는 啞者의 陳述에는 通譯人으 로 하여금 通譯하게 할 수 있 다.
- ① 犯罪의 實行 中이거나 實行 의 卽後인 者를 現行犯人이라 한다.
 - ②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現行犯人으로 看做한다 1. 犯人으로 呼唱되어 追跡되고

	<u>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u>
2.	(현행과 같음)
3.	<u></u> भु०]
	<u></u> 진
	<u>술할</u>
	- <u>사람</u>
<u>17</u>	7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
	제12장(구인에 관한 규정은
제	외한다)을 준용한다.

- 통역)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 게 할 수 있다.
- 第211條(現行犯人과 準現行犯人) |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 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 범인이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있는 때

- 2. 贓物이나 犯罪에 使用되었다고 認定함에 充分한 兇器 其他의 物件을 所持하고 있는때
- 3. 身體 또는 衣服類에 顯著한證跡이 있는 때
- 4. 누구임을 물음에 對하여 逃 亡하려 하는 때
- 第214條의2(逮捕와 拘束의 適否 審査) ① 체포 또는 구속된 被 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 人,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 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 ② <u>피의자를 체포 또는</u> 구속한 검사 또는 <u>사법경찰관은 체포</u>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u>자</u> 중에서 피의자가 지 정하는 <u>자에게</u>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 ③ -

-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 <u>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u> <u>할 때</u>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 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 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 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 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 할 수 있다.

2 2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사법경찰관은	체포
되거	나		
	<u>ك</u>	-람	
		- <u>사람에게</u>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令狀 또는拘束令狀의 發付에 대하여再請求한 때
- 2. 共犯 또는 公同被疑者의 順 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 이 明白한 때
- ④ 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 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查關係書 類와 證據物을 調查하여 그 請求가 理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理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

-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

 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

 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

 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

 백한 때
-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

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 을 보증할 만한 保證金의 納入 을 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제 4항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 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있는 때
- 2.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민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住居의 제한, 法院 또는 檢事가 지정하는 日時·場所에 출석할 義務 기타 적당한 조건 을 부가할 수 있다.
- ① 제99조 및 제100조는 제5항에 따라 保證金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準用한다.

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 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

 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 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 에 출석할 의무, 그 밖에 적당 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7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 ⑧ 제3항과 제4항의 決定에 대 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 ⑨ 檢事·辯護人·請求人은 제4항

 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

 을 陳述할 수 있다.
- ⑩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 ①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發付한 法官은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의 審問・調査・決定에 關 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令狀 또는 拘束令狀을 발부한 法官 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 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 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
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
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
33조를 준용한다.
①
<u>취해야</u>
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바보장 버피스 제4청보다 케스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
<u>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u>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역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 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 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 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 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 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다.

포함한다) 및 <u>제200</u>조의4제1항 -----<u>제200</u>조의4제1항 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 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 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에 준용한다.
- 第214條의3(再逮捕 및 再拘束의 制限) ① 제214조의2제4항의 規定에 의한 逮捕 또는 拘束適 被疑者가 逃亡하거나 罪證을 湮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同一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 次 逮捕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釋 放된 被疑者에 대하여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犯罪事實에 관하여 再次 逮捕し 또는 拘束하지 못한다.
 - 1. (생략)
 - 2. 도망하거나 罪證을 湮滅할 2.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을 적용할 때에는---------제205조를 적용할 때에 는-----아 는다.

- ④ 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 6항을 준용한다.
-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 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 否審査決定에 의하여 釋放된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 가_도망하<u>거나 범죄의 증거를</u>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
 - ②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석 방된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 나 구속할 수 없다.
 - 1. (현행과 같음)
 -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u>아니한</u> 때
- 한 조건을 위반한 때
- 第1審 判決宣告 前까지 取消할 수 있다.
 - 告訴하지 못한다
 - ③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 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件 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 제248조(공소효력의 범위) ① 공 제248조(공소의 효력 범위) ① 공 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 소의 효력은-----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
- 間) 2個 以上의 刑을 倂科하거 나 2個 以上의 刑에서 그 1個 |

분한 이유가 있는 때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4. 住居의 제한 기타 法院이 정 4.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 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第232條(告訴의 取消) ① 告訴는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② 告訴를 取消한 者는 다시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에 있어서 處罰을 希望하는 意 |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 思表示의 撤回에 關하여도 前2 시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 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자에게만 미친다.

(2) -----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第250條(2個 以上의 刑과 時效期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 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 (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 를 科할 犯罪에는 重한 刑에 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依하여 前條의 規定을 適用한 | 다.

- 境遇에는 判決로써 公訴棄却의 宣告를 하여야 한다.
 - 1. 被告人에 對하여 裁判權이 없는 때
 - 2. 公訴提起의 節次가 法律의 規定에 違反하여 無效인 때
 - 3. 公訴가 提起된 事件에 對하 여 다시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 4. 第329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公訴가 提起되었을 때
 - 5. 告訴가 있어야 罪를 論할 事 件에 對하여 告訴의 取消가 있은 때
 - 6. 被害者의 明示한 意思에 反 하여 罪를 論할 수 없는 事 件에 對하여 處罰을 希望하 지 아니하는 意思表示가 있 거나 處罰을 希望하는 意思 表示가 撤回되었을 때
- 第345條(上訴權回復請求權者) 第3 | 제345조(상소권회복 청구권자) 제 38條 乃至 第341條의 規定에

-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 第327條(公訴棄却의 判決) 다음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 소기각의 선고를 해야 한다.
 -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 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 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 依하여 上訴할 수 있는 者는| 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自己 또는 代理人이 責任질 수 없는 事由로 因하여 上訴의 提 起期間內에 上訴를 하지 못한 때에는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① 上訴權回復의 請求는 事由 가 終止한 날로부터 上訴의 提 起期間에 相當한 期間内에 書 面으로 原審法院에 提出하여야 한다.

② 上訴權回復의 請求를 할 때 에는 原因된 事由를 疏明하여 야 한다.

③ 上訴權의 回復을 請求한 者 는 그 請求와 同時에 上訴를 提起하여야 한다.

第368條(不利益變更의 禁止) 被告 人이 抗訴한 事件과 被告人을 爲하여 抗訴한 事件에 對하여 는 原審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 을 宣告하지 못한다.

第420條(再審理由) 再審은 다음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各 號의 1에 該當하는 理由가 있는 境遇에 有罪의 確定判決 에 對하여 그 宣告를 받은 者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 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 다.

第346條(上訴權回復請求의 方式) | 제346조(상소권회복 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 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 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 법원에 해야 한다.

>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 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 해야 한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 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 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 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

- 있다.
- 證據物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偽造 또는 變造인 것이 證明 된 때
- 2. 原判決의 證據된 證言,鑑定 ,通譯 또는 飜譯이 確定判決 에 依하여 虛僞인 것이 證明 된 때
- 3. 誣告로 因하여 有罪의 宣告 를 받은 境遇에 그 誣告의 罪가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 明된 때
- 4. 原判決의 證據된 裁判이 確 定裁判에 依하여 變更된 때
- 5.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 하여 無罪 또는 免訴를, 刑의 宣告를 받은 者에 對하여 刑 의 免除 또는 原判決이 認定 한 罪보다 輕한 罪를 認定할 明白한 證據가 새로 發見된 때
- 6. 著作權, 特許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또는 商標權을 侵害 한 罪로 有罪의 宣告를 받은

- 의 利益을 爲하여 請求할 수 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1. 原判決의 證據된 書類 또는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 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 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 임이 증명된 때
 -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 명된 때
 -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 명된 때
 -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 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 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 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 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 된 때
 -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

한 無效의審決 또는 無效의 判決이 確定된 때

7. 原判決, 前審判決 또는 ユー 判決의 基礎 된 調査에 關與 한 法官, 公訴의 提起 또는 그 公訴의 基礎된 搜査에 關 與む 檢事나 司法警察官이 그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한 것이 確定判決에 依하여 證 明된 때 但, 原判決의 宣告前 에 法官,檢事 또는 司法警察 官에 對하여 公訴의 提起가 있는 境遇에는 原判決의 法 院이 그 事由를 알지 못한 때에 限하다.

第439條(不利益變更의 禁止) 再審 | 제439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재심 에는 原判決의 刑보다 重한 刑 을 宣告하지 못한다.

第462條(刑執行의 順序) 2以上의 | 제462조(형 집행의 순서) 2이상의 刑의 執行은 資格喪失, 資格停 止, 罰金, 科料와 沒收外에는 그 重한 刑을 먼저 執行한다. 얻어 重한 刑의 執行을 停止하!

事件에 關하여 그 權利에 對 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 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 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 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 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 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에는 원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격상 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 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但,檢事는 所屬長官의 許可를 집행한다. 다만, 검사는 소속 장관의 허가를 얻어 무거운 형 다.

第469條(死刑執行의 停止) ① 死 제469조(사형 집행의 정지) ① 사 刑의 宣告를 받은 者가 心神의 障碍로 意思能力이 없는 狀態 에 있거나 孕胎中에 있는 女子 인 때에는 法務部長官의 命令 으로 執行을 停止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刑의 執行을 停止한 境遇에는 心神 障碍의 回復 또는 出産後 法務 部長官의 命令에 依하여 刑을 執行한다.

고 다른 刑의 執行을 할 수 있 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 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 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 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 행을 정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에 법무부장 관의 명령에 의하여 형을 집행 한다.